

인천지방법원 2023. 2. 7 선고 2022가단2031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찬(소송구조)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길환

변 론 종 결 2023. 1. 10.

판 결 선 고 2023. 2. 7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18. 5. 28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2019. 2. 11. 접수 제476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인정 사실

1) 원고는 D 유한회사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한 후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819559호로 양수금 소를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18. 9. 7. ‘C은 원고에게 13,575,875원 및 그 중 3,460,273원에 대하여 2018. 7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18. 9. 29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2) C의 부친인 E(이하 ‘망인’)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)을 소유하던 중 사망하였는데,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, F, C, G이 있었다.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인천지방법원 2019. 2. 11. 접수 제47606호로 ‘2018. 5. 28.자 협의분할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’)에 의한 상속’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되었다.

3)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~4, 변론 전체 취지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

가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 이전부터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

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).

따라서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나)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부양하며 생활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망인의 재산을 유지하는 데에 특별하게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,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고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), 또한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,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의 성립을 다룰 수 없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8334 판결,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을 하면서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간에 피고 주장과 같은 기여분 산정의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2)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

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, 이때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며,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볼 수 없다.

3) 소결론

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/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약정은

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/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.

판사 조현욱

별지